사용후 배터리의 관리 및 산업육성에 관한 법률안 (박형수의원 대표발의)

의 안 번 호 10540

발의연월일: 2025. 5. 16.

발 의 자: 박형수·강승규·윤한홍

조배숙 • 주호영 • 김형동

구자근 · 최형두 · 조지연

이철규 의원(10인)

제안이유

전기차, ESS 등을 통한 배터리 보급이 확대되면서, 사용후 배터리가 전 세계적으로 급증할 것으로 전망되고 있음. 주요국은 사용후 배터리의 산업적 가치, 공급망 측면의 중요성을 감안하여 관련 법·제도를 마련하고, 재정지원하는 등 적극적으로 산업을 육성하고 있음.

하지만 현재 국내에서는 사용후 배터리를 산업적 관점이 아닌, 환경규제 관련 제도 중심으로 관리하고 있으며, 21년 이후 등록된 전기차배터리의 지방자치단체 반납 의무가 폐지됨에 따라 반납 대상이 아닌전기차 배터리에 대한 관리 공백이 발생하는 등 체계적 관리시스템이부재함.

한편, EU 배터리법 시행 등 글로벌 통상 규제가 강화되고, 각 국의 보호주의로 인해 배터리 원자재 공급망이 불안정한 가운데 사용후 배 터리의 효율적 재자원화는 미래 산업 경쟁력 확보에 필수적인 과제임. 이에 사용후 배터리 산업 육성에 관한 기본법을 제정하여 사용후 배터리 시장조성, 유통·안전관리 등 기본 체계를 마련하고자 함.

주요내용

- 가. 이 법의 목적은 사용후 배터리의 관리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여 사용후 배터리 산업의 지속가능한 성장기반을 구축함으로써 배터리 공급망 안정화와 국민경제의 발전에 이바지하도록 함(안 제1조).
- 나. 전기자동차등배터리 또는 기타 에너지저장장치배터리로서 그 사용이 종료된 배터리를 '사용후 배터리'로 하는 등 법안의 주요 용어에 관하여 정의함(안 제2조).
- 다. 사용후 배터리의 관리에 관하여는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르도록 함(안 제3조).
- 라. 사용후 배터리 산업의 체계적인 육성·지원을 통한 재제조·재사용·재활용 산업의 지속가능한 성장기반을 구축하기 위하여 기획재정부에 '사용후 배터리 정책위원회'를 설치하여 배터리 정책의 조정및 지원에 관한 사항, 사용후 배터리 거래 및 등록에 관한 사항 등을 심의·조정하도록 함(안 제4조).
- 마. 사용후 배터리의 판매 또는 판매를 중개·알선하려는 자(유통사업자) 및 사용후 배터리를 재사용하는 것을 업으로 하려는 자(재사용사업자)는 적정한 기준을 갖추어 산업통상자원부장관에게 등록하도

- 록 하며, 이에 따른 등록 취소나 지위 승계 등을 규정함(안 제5조부터 제13조까지).
- 바. 전기자동차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제품을 소유한 자는 사용후 배터리를 해당 제품으로부터 분리하려는 경우에는 이를 분리하기 전에 사용후 배터리의 성능 및 안전에 관한 평가를 받도록 규정함 (안 제14조).
- 사. 재제조되거나 재사용된 배터리가 탑재된 제품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제품에 대한 유통 전 안전검사 및 정기 안전검사를 규정함 (안 제15조 및 제16조).
- 아. 사용후 배터리의 운송, 보관에 대한 기준 준수를 규정함(안 제17조).
- 자. 사용후 배터리의 전주기 이력 및 상태에 관한 정보를 효율적이고 체계적으로 관리하고 안정적인 배터리 공급망을 확보하기 위하여 사용후 배터리 이력관리시스템을 구축하도록 함(안 제21조).
- 차. 배터리 공급망 전 과정에서 재생원료의 생산, 재생원료 사용여부 및 함유율 등을 검증·인증할 수 있는 재생원료 인증제도를 운영하 도록 하면서, 이를 바탕으로 제조 또는 수입 배터리의 재생원료 함 유율 목표제를 규정함(안 제22조부터 제24조까지).
- 카. 그 밖에 청문, 권한의 위임·위탁, 벌칙 등의 내용을 규정함(안 제 25조부터 제28조까지).

참고사항

이 법률안은 엄태영의원이 대표발의한 「자동차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제9416호)의 의결을 전제로 하는 것이므로 같은 법률안이 의결되지 아니하거나 수정의결되는 경우에는 이에 맞추어 조정되어야 할 것임.

사용후 배터리의 관리 및 산업육성에 관한 법률안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법은 사용후 배터리의 관리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여 사용후 배터리 산업의 지속가능한 성장기반을 구축함으로써 배터리 의 공급망 안정화와 국민경제의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사용후 배터리"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으로서 그 사용이 종료된 배터리를 말한다.

가. 전기자동차등배터리

- 1)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 촉진에 관한 법률」 제 2조제3호에 따른 전기자동차, 같은 조 제5호에 따른 하이브리 드자동차 또는 같은 조 제6호에 따른 수소전기자동차에 탑재 된 구동축전지
- 2) 「건설기계관리법」 제2조제1항제1호에 따른 건설기계 중 전 기를 동력원으로 사용하는 기계(이하 "전기건설기계"라 한다) 에 탑재된 구동축전지
- 3) 「농업기계화 촉진법」 제2조제1호에 따른 농업기계 중 전기

를 동력원으로 사용하는 기계(이하 "전기농업기계"라 한다)에 탑재된 구동축전지

- 나. 기타에너지저장장치배터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제품에 탑재 되어 에너지를 저장하는 축전지
- 2. "유통사업자"란 사용후 배터리의 판매 또는 판매를 중개·알선하는 것을 업으로 하는 자로서 제5조에 따라 등록한 자를 말한다.
- 3. "재제조사업자"란 사용이 종료된 전기자동차등배터리를 구매 또는 획득하여 그 부속품 교체 등 수리를 거쳐 전기자동차등배터리로 제작·조립(이하 "재제조"라 한다)하기 위하여 「자동차관리법」 제35조의16에 따라 부품제작자등으로 등록한 자를 말한다.
- 4. "재사용사업자"란 사용후 배터리를 구매 또는 획득하여 그 부속 품 교체 등 수리를 거쳐 전기자동차등배터리가 아닌 배터리로 제작·조립(이하 "재사용"이라 한다)하는 것을 업으로 하는 자로서 제9조에 따라 등록한 자를 말한다.
- 5. "재활용사업자"란 배터리(배터리를 제조하는 과정에서 나오는 부산물을 포함한다. 이하 제6호에서 같다)를 재생원료를 추출할 수있는 상태로 만들거나 배터리로부터 재생원료를 추출(이하 "재활용"이라 한다)하기 위하여 「폐기물관리법」 제25조제5항제5호부터 제7호까지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폐기물처리업의 허가를 받은 자를 말한다.
- 6. "재생원료"란 배터리에서 추출한 리튬・코발트・니켈 등 유가금

속 또는 그 화합물을 말한다.

제3조(다른 법률과의 관계) 사용후 배터리의 관리에 관하여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법에서 정하는 바에따른다.

제2장 사용후 배터리 정책위원회

- 제4조(사용후 배터리 정책위원회) ① 사용후 배터리 산업의 체계적인 육성·지원을 통한 재제조·재사용·재활용 산업의 지속가능한 성 장기반을 구축하기 위하여 기획재정부에 사용후 배터리 정책위원회 (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 ②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 ·조정한다.
 - 1. 사용후 배터리와 관련된 정책의 조정 및 지원에 관한 사항
 - 2. 사용후 배터리의 거래 및 등록에 관한 사항
 - 3. 사용후 배터리의 안전관리에 관한 사항
 - 4. 제21조에 따른 사용후 배터리 이력관리시스템에 관한 사항
 - 5. 관련 법령, 고시 등의 제정 · 개정에 관한 사항
 - 6. 그 밖에 위원장이 사용후 배터리의 관리와 관련하여 심의·조정 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 ③ 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11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 ④ 위원장은 기획재정부장관이 지명하는 기획재정부차관이 되고,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이 된다.
- 1.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 등 대 통령령으로 정하는 사람
- 2. 사용후 배터리 산업의 체계적인 육성·지원 또는 지속가능한 재제조·재사용·재활용 산업에 관하여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중 위원장이 위촉하는 사람
- ⑤ 제4항제2호에 따라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 ⑥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 ⑦ 위원장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 ⑧ 위원회의 회의는 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 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 ⑨ 위원회의 업무를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위원회에 분과위 원회를 둘 수 있다.
- ① 제1항부터 제9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위원회 및 분과위원 회의 구성·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3장 유통사업자 등

- 제5조(유통사업자의 등록) ① 유통사업자가 되려는 자는 시설기준, 인력기준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을 갖추어 산업통상자원부장관에게 등록하여야 한다. 등록한 사항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요한사항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 ② 제1항에 따른 등록의 방법 및 절차 등 등록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산업통상자원부령으로 정한다.
- 제6조(유통사업자의 준수사항) ① 유통사업자는 다른 유통사업자, 재 제조사업자, 재사용사업자 및 재활용사업자에게만 사용후 배터리를 판매 또는 판매를 중개·알선할 수 있다. 다만, 연구 목적으로 연구 기관 또는 연구자에게 제공하는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② 유통사업자는 사용후 배터리를 판매하려는 경우에는 제14조에 따른 성능평가의 결과(전기자동차등배터리의 경우에는 「자동차관리법」 제35조의13에 따른 성능평가의 결과를 말한다)를 구매자에게 제공하여야 한다.
- 제7조(유통사업자의 지위 승계)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로서 유통사업자의 지위를 승계하려는 자는 그 상속일, 양도일 또는 합병일부터 30일 이내에 산업통상자원부령으로 정하는 바에따라 산업통상자원부장관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 1. 유통사업자가 사망한 경우 그 상속인
 - 2. 유통사업자가 그 사업의 전부 또는 일부를 양도한 경우 그 양수

인

- 3. 법인인 유통사업자가 다른 법인과 합병한 경우 합병 후 존속하는 법인이나 합병에 따라 설립된 법인
- ②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신고를 받은 경우 그 내용을 검토하여 이 법에 적합하면 신고를 수리하여야 한다.
- ③ 제1항에 따른 신고가 수리된 경우에는 상속인, 양수인 또는 합병으로 설립되거나 합병 후 존속하는 법인은 그 상속일, 양도일, 또는합병일부터 종전의 유통사업자의 지위를 승계한다.
- 제8조(유통사업자 등록취소 등) ①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유통사업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그 등록을 취소하거나 6개월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사업의 정지를 명할 수 있다. 다만, 제1호에 해당하면 등록을 취소하여야 한다.
 - 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제5조제1항에 따른 등록 또는 변경등록을 한 경우
 - 2. 제5조제1항에 따른 등록 기준을 충족하지 못하게 된 경우
 - 3. 사업정지처분 기간 중에 사업을 한 경우
 - 4. 제6조에 따른 유통사업자의 준수사항을 위반한 경우
 - 5. 제17조에 따른 기준을 위반하여 사용후 배터리를 운송하거나 보관한 경우
 - 6.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
 - ② 제1항에 따른 행정처분의 기준과 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

- 은 산업통상자원부령으로 정한다.
- 제9조(재사용사업자의 등록) ① 재사용사업자가 되려는 자는 시설기준, 인력기준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을 갖추어 산업통상자원 부장관에게 등록하여야 한다. 등록한 사항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요한 사항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 ② 제1항에 따른 등록의 방법 및 절차 등 등록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산업통상자원부령으로 정한다.
- 제10조(재사용사업자의 지위 승계) 재사용사업자의 지위 승계에 관하여는 제7조를 준용한다. 이 경우 "유통사업자"는 "재사용사업자"로 본다.
- 제11조(재사용사업자의 등록취소 등) 재사용사업자의 등록취소 및 사업정지에 관하여는 제8조(제1항제4호는 제외한다)를 준용한다. 이경우 "유통사업자"는 "재사용사업자"로, "제5조제1항"은 "제9조제1항"으로 본다.
- 제12조(재제조사업자의 등록 등) 재제조사업자는 「자동차관리법」에 서 정하는 바에 따라 등록하고, 업을 영위한다.
- 제13조(재활용사업자의 허가 등) 재활용사업자는 「폐기물관리법」에 서 정하는 바에 따라 폐기물처리업 허가를 받고, 업을 영위한다.

제4장 사용후 배터리의 안전관리

- 제14조(사용후 배터리에 대한 성능평가) ① 전기자동차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제품을 소유한 자는 사용후 배터리를 해당 제품으로부터 분리하려는 경우에는 이를 분리하기 전에 사용후 배터리의 성능 및 안전에 관한 평가(이하 "성능평가"라 한다)를 받아야 한다. 다만, 제품의 특성상 사용후 배터리를 분리하기 전에 성능평가를 받기 곤란한 경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 해당하면 사용후 배터리를 분리한 후에 성능평가를 받을 수 있다.
 - ② 사용후 배터리 중 전기자동차등배터리에 대한 제1항의 성능평가에 관하여는 「자동차관리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 ③ 사용후 배터리 중 기타에너지저장장치배터리에 대한 제1항의 성능평가를 받으려는 자는 산업통상자원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산업통상자원부장관에게 성능평가를 신청하여야 한다.
 - ④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제3항에 따라 성능평가 신청을 받은 경우에는 사용후 배터리의 성능 및 안전성을 산업통상자원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평가한 후 그 결과를 신청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 ⑤ 누구든지 제4항에 따른 성능평가의 결과를 위조하거나 변조하여서는 아니 된다.
 - ⑥ 제4항에 따른 평가 기준 및 방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산업통상자원부령으로 정한다.

제15조(안전검사대상제품의 유통 전 안전검사) ① 재제조되거나 재사

용된 배터리가 탑재된 제품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제품(이하 "안전검사대상제품"이라 한다)을 판매하려는 자는 해당 제품을 판매하기 전에 유통 전 안전검사를 받아야 한다. 다만, 해당 제품에 대하여 개별 법률에 따라 유통 전 안전검사에 상응하는 검사를 받은 경우에는 이 법에 따른 유통 전 안전검사를 받은 것으로 본다.

- ② 안전검사대상제품 중 재제조된 배터리가 탑재된 제품에 대한 제 1항의 유통 전 안전검사에 관하여는 「자동차관리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 ③ 제1항에 따른 유통 전 안전검사의 기준·절차·방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산업통상자원부령으로 정한다.
- 제16조(안전검사대상제품의 정기 안전검사) ① 안전검사대상제품을 소유한 자는 제15조제1항에 따른 유통 전 안전검사를 받은 날부터 매 3년마다 정기 안전검사를 받아야 한다. 다만, 해당 제품에 대하여 개별 법률에 따라 정기 안전검사에 상응하는 검사를 받은 경우에는 이 법에 따른 정기 안전검사를 받은 것으로 본다.
 - ② 안전검사대상제품 중 재제조된 배터리가 탑재된 제품에 대한 제 1항의 정기 안전검사에 관하여는 「자동차관리법」에서 정하는 바 에 따른다.
 - ③ 제1항에 따른 정기 안전검사의 기준·절차·방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산업통상자원부령으로 정한다.

제17조(사용후 배터리의 운송 기준 등) 사용후 배터리를 운송하거나

보관하는 자는 산업통상자원부장관, 환경부장관 및 국토교통부장관 이 공동으로 고시하는 기준을 준수하여야 한다.

제5장 사용후 배터리 산업 육성 등

- 제18조(국가 및 지방자치단체 등의 책무)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사용후 배터리 산업의 기반조성과 경쟁력 강화 및 기술개발, 투자 촉진 등을 위하여 종합적이고 체계적인 전략과 정책을 수립하고 이를 추진하여야 한다.
 - ②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사용후 배터리의 시장 조성 및 거래 활성화, 안전하고 투명한 유통체계 확립 등을 위하여 필요한 행정적· 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 ③ 사용후 배터리 산업을 영위하는 사업자는 사용후 배터리 기술의 연구·개발 기반 조성과 전략기술의 유출방지 등을 통하여 사용후 배터리 산업의 경쟁력 강화와 산업발전에 이바지할 수 있도록 노력 하여야 한다.
- 제19조(사용후 배터리의 활용 촉진) ① 유통사업자, 재제조사업자, 재사용사업자 및 재활용사업자는 사용후 배터리가 성능평가의 결과에 맞게 활용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 ②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정부의 국고보조금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일정한 금액 이상 수령한 기관 또는 법인이 보조사업과 관련하

- 여 제품을 구매하려는 때에는 재제조되거나 재사용된 배터리가 탑재된 제품을 우선적으로 구매하도록 권고할 수 있다.
- 제20조(사용후 배터리의 공정 거래)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사용후 배터리의 공정한 거래를 위한 가이드라인을 마련하여 유통사업자, 재제조사업자, 재사용사업자 및 재활용사업자가 사용후 배터리를 거래할 때 이를 적극 활용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 제21조(사용후 배터리 이력관리시스템의 구축) 정부는 사용후 배터리 이력정보의 효율적인 관리를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 라 전자정보처리시스템을 구축·운영할 수 있다.
- 제22조(재생원료 생산 인증제도) ① 환경부장관은 자원의 순환이용 촉진을 위하여 재생원료가 배터리에서 추출된 재생원료임을 인증할수 있다.
 - ② 환경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인증을 실시할 경우 산업통상자원부 장관과 협의하여 인증의 대상, 기준, 절차 및 사후관리 등 필요한 세부사항을 정한 후 이를 고시하여야 한다.
 - ③ 환경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인증을 받은 자가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인증을 받은 경우에는 그 인증을 취소하여야 한다.
 - ④ 제3항에 따른 인증 취소의 기준 및 절차 등에 관하여는 환경부 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 제23조(재생원료 사용여부 및 함유율 인증제도) ① 산업통상자원부장 관은 배터리의 공급망 안정화를 위하여 재생원료를 활용하여 제조

- 한 배터리에 대한 재생원료 사용여부 및 함유율을 인증할 수 있다.
- ②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인증을 실시할 경우 환경부 장관과 협의하여 인증의 대상, 기준, 절차 및 사후관리 등 필요한 세부사항을 정한 후 이를 고시하여야 한다.
- ③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인증을 받은 자가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인증을 받은 경우에는 그 인증을 취소하여야 한다.
- ④ 제3항에 따른 인증 취소의 기준 및 절차 등에 관하여는 산업통 상자원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 제24조(재생원료 함유율 목표제) ① 환경부장관은 배터리의 순환이용 및 재생원료 사용을 촉진하기 위하여 제조 또는 수입하는 배터리에 대한 재생원료별 함유율 목표를 정할 수 있다.
 - ② 환경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함유율 목표를 정하려는 경우에는 산업통상자원부장관과 협의하여 대상 품목, 함유율 목표,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여 고시하여야 한다.
 - ③ 환경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함유율 목표 달성여부를 확인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배터리를 제조 또는 수입하는 자에게 관련자료 및 정보의 제공을 요청할 수 있다.

제6장 보칙

- 제25조(청문) 산업통상자원부장관 및 환경부장관은 이 법에 따라 등록 또는 인증을 취소하거나 사업정지를 하려는 경우에는 청문을 하여 야 한다.
- 제26조(권한의 위임 및 업무의 위탁) ① 이 법에 따른 산업통상자원부 장관 또는 환경부장관의 권한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일부를 다른 행정기관의 장에게 위임할 수 있다.
 - ② 이 법에 따른 산업통상자원부장관 또는 환경부장관의 업무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일부를 관련 법인 또는 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

제7장 벌칙

- 제27조(벌칙)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 1. 제14조제5항을 위반하여 성능평가의 결과를 위조하거나 변조한 자
 - 2.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제22조제1항 또는 제23조제1항에 따른 인증을 받은 자
 -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 1. 제5조제1항에 따른 등록(변경등록을 포함한다)을 하지 아니하고

사용후 배터리를 판매하거나 판매를 중개・알선한 자

- 2. 제6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준수사항을 위반한 자
- 3. 제9조제1항에 따른 등록(변경등록을 포함한다)을 하지 아니하고 사용후 배터리를 재사용한 자
- 4. 제15조제1항을 위반하여 유통 전 안전검사를 받지 아니하고 안전 검사대상제품(재제조된 배터리가 탑재된 제품은 제외한다)을 판매 한 자
- 제28조(과태료)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3백 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 1. 제7조제1항(제10조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따른 지위 승계 신고를 하지 아니한 자
 - 2. 제14조제1항에 따른 성능평가를 받지 아니하고 사용후 배터리(기타에너지저장장치배터리만 해당한다)를 분리한 자
 - 3. 제16조제1항을 위반하여 안전검사대상제품(재제조된 배터리가 탑 재된 제품은 제외한다)의 정기 안전검사를 받지 아니한 자
 - ② 제1항에 따른 과태료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산업통 상자원부장관 또는 환경부장관이 부과·징수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법은 2027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22조는

- 이 법 시행일부터 4년을 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날부터 시행한다.
- 제2조(유통사업자의 등록에 관한 경과조치) ① 이 법 시행 당시 사용후 배터리의 판매 또는 판매를 중개·알선하는 것을 업으로 하는 자는 이 법에 따라 등록을 한 것으로 본다. 다만, 이 법 시행일부터 6개월 이내에 제5조제1항에 따른 등록 기준을 갖추어 다시 등록을 하여야 한다.
 - ② 제1항 단서에 따른 기간 내에 다시 등록을 하지 아니하면 그 기간이 경과한 날부터 해당 등록의 효력은 상실한다.
- 제3조(재사용사업자의 등록에 관한 경과조치) ① 이 법 시행 당시 사용후 배터리를 재사용하는 것을 업으로 하는 자는 이 법에 따라 등록을 한 것으로 본다. 다만, 이 법 시행일부터 6개월 이내에 제9조제1항에 따른 등록 기준을 갖추어 다시 등록을 하여야 한다.
 - ② 제1항 단서에 따른 기간 내에 다시 등록을 하지 아니하면 그 기간이 경과한 날부터 해당 등록의 효력은 상실한다.